

2023년 신성장 기술매칭사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의 신기술 도입 지원을 통한 R&D역량 강화를 위하여 2023년 신성장 기술매칭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0일

경기도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I.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최신기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신기술 도입을 지원하여 R&D역량을 강화하고, 산·학·연 협업체계 활성화 촉진
- 지원규모 : 참여기업 44개사 내외(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기간 : 2023년 5월 10일 ~ 2023년 11월 30일까지(약 6개월)
- 지원분야

구분	분야
초격차 10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양자기술
탄소중립	ESS, 배터리 재활용, 친환경 에너지, 탄소포집, 액화수소
소재·부품·장비	기계금속, 기초화학,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전기전자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등

II. 지원 내용

- 신기술 목록 수집 및 공개
 - (전문가 모집) 초격차 10대 분야 등*의 최신기술을 보유한 전국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의 기술 수집
 - * 초격차 10대, 탄소중립, 소재·부품·장비 관련 신기술 분야(I. 사업개요 지원분야 참조)
 - (기술 공개) 수집한 기술 목록을 '신성장기술매칭플랫폼.kr'을 통해 신기술 매칭을 필요로 하는 도내 중소기업에게 공개

□ 1:1 기술지도

- (신기술 매칭) 참여기업이 도입을 희망하는 신기술에 대하여 '전문가 최신기술 목록'에 등록된 기술 전문가와 매칭
- (사전미팅) '전문가-참여기업'간 사전 미팅을 통해 기술자료·업체를 소개하여 매칭한 전문가가 참여기업의 기술개발에 적합한지 확인
 - * 진행시간 30분 내외, 온라인으로 진행
- (1:1 기술지도) 사전미팅 참여기업 중 전문가의 현장지도를 희망하는 경우 1:1 기술지도 지원

Ⅲ. 지원 예산

□ 1:1 기술지도 지원

- (참여기업) 연간 최대 16시간 이내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기술지도 진행 가능하며, 기술지도 비용 90% 정부지원(기업부담금 10%)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예시>

지도시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현금)	합계
1시간	90,000원	10,000원	100,000원
16시간	1,440,000원	160,000원	1,600,000원

- (전문가) 기술지도 완료 후 기업부담금을 포함하여 시간당 100천원 수당 지급(연간 최대 20시간으로 제한)

Ⅳ. 신청 · 접수

① 전문가

- 신청대상 : 전국의 대학교수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5일(월) ~ 2023년 11월 30일(목), 18시까지(상시)
- 신청방법
 - (전문가 및 기술자료 등록) '신성장기술매칭플랫폼.kr'에서 신청

- ① 전문가 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전문가 등록 신청
- ② 경기중기청의 승인을 득한 후, 플랫폼에 기술소개 직접 입력
 - * 제출서류 : 별지 제1호(양식 참고), 세부 기술 설명자료는 첨부파일로 업로드 가능
- ③ 경기중기청 승인 후 기업에 공개
- (기술지도) 참여기업의 매칭 요청 시 사전미팅 및 1:1 기술지도 진행
 - * 제출서류 : (사전미팅) 별도 없음, (1:1 기술지도) 별지 제3호(붙임 포함) 및 별첨 1~3, 5

② 참여기업

- 신청대상 : 경기도에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공장 어느 한곳의 소재지가 경기지역인 사업장

신청 제외 대상

- ① 휴·폐업 기업
- ②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구분	확인 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 사업 제재조회

- 신청기간 : 매월(6~10월) 1일 ~ 15일, 18시까지

* 단, 접수시작일 및 접수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부터 접수시작 및 접수마감(~18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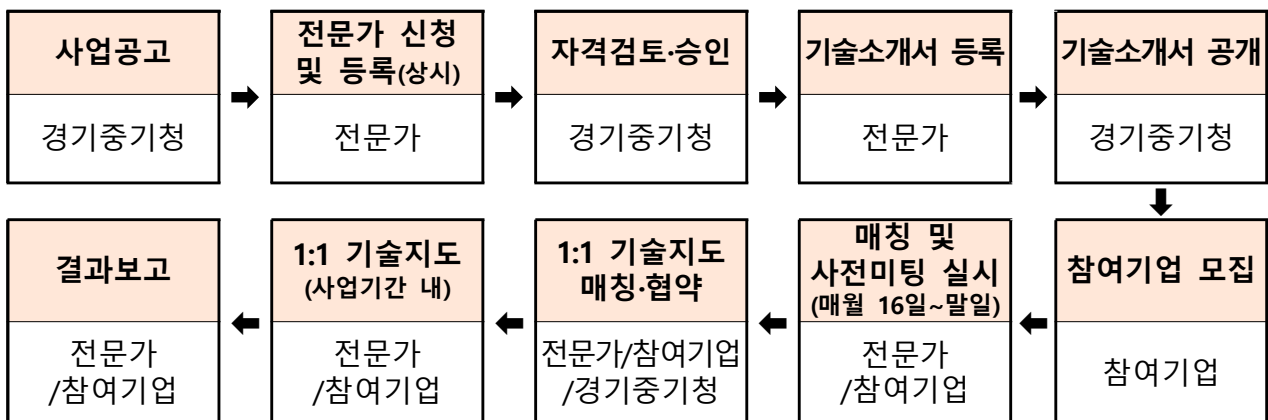
차수별	월별	접수기간
1차	6월	2023년 6월 1일(목) ~ 2023년 6월 15일(목), 18시까지
2차	7월	2023년 7월 3일(월) ~ 2023년 7월 17일(월), 18시까지
3차	8월	2023년 8월 1일(화) ~ 2023년 8월 16일(수), 18시까지
4차	9월	2023년 9월 1일(금) ~ 2023년 9월 15일(금), 18시까지
5차	10월	2023년 10월 2일(월) ~ 2023년 10월 16일(월), 18시까지

□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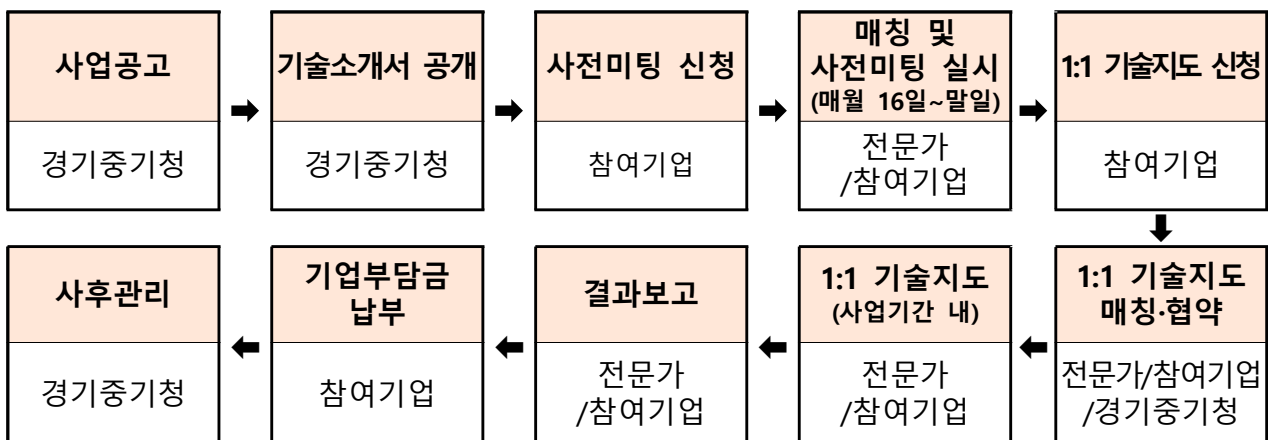
- (신청가입) 기업 회원으로 회원가입 진행
- (사전미팅) '신성장기술매칭플랫폼.kr'에서 신청
 - ① 전문가의 기술자료 조회(문자열, 산업기술표준분류로 구분하여 조회)
 - ② 매칭하고자 하는 전문가에 사전미팅 신청
 - * 제출서류 : 별도 없음(플랫폼에서 '사전미팅' 신청하기 버튼 클릭)
- (1:1 기술지도) 사전미팅 후 전문가의 지도를 희망하는 경우 매칭한 전문가와 1:1 기술지도 진행
 - * 제출서류 :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붙임 포함) 및 별첨 1, 3~4

V. 지원 절차

□ 전문가



□ 참여기업



6. 문의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

○ ☎ 031-201-6973, 031-201-6963 / kbk1206@korea.kr

신성장 기술매칭 기술소개서

기관명 (소속)			
성명		직급	
색인어	※ (참고) 검색어로 소속, 성명, 색인어를 활용하므로 색인어를 다양하게 입력하면 검색될 확률이 높음		
보유기술	※ (참고) 유튜브 등에 보유 기술에 대한 동영상이 게시된 경우 링크 주소 추가		
연구분야	※ (권고)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용사례 추가		
연구현황	※ (참고) 연구실적, 진행중인 연구 등 기업과의 매칭에 도움이 될 내용을 작성		
수상경력			
표준분류	※ (참고) 유사분야 기술을 검색하여 참고할 수 있음		
첨부파일	※ (참고) 지식재산권, 동영상 등 기술 관련 참고자료 5개까지 등록 가능		

* 위 양식을 참고하여 '신성장기술매칭플랫폼.kr'에 직접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서식] 협약서(참여기업, 전문가 제출)

협 약 서

사업명 : 2023년 신성장 기술매칭사업(1:1 기술지도)

지도기술명 :

참여기업

업체명		주소	
대표자		연락처	T. H.
담당자		연락처	T. H. (E-MAIL)

전문가

소속		성명	
주소		연락처	T. H. (E-MAIL)

지도기간 :

※ 예시 : 2023년 6월 10일 ~ 2022년 8월 10일(총 16시간)

사업비 : 원 ※ 협약 변경시 금액 조정

- 정부지원금(90%) : 90,000원× 시간 = 원
- 민간부담금(10%) : 10,000원× 시간 = 원

위 신성장기술매칭사업 수행에 관하여 참여기업, 전문가는 붙임 표준 약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2023. . .

관리기관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직인생략)

참여기업 : 대표(이사) (인)

전문가 : (인)

(붙임)

신성장 기술매칭사업 표준약관

제1조 목적

이 표준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신성장 기술매칭사업(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고 제2023-10호) 1:1 기술지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 최신기술 지도 전문가와의 기술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협력 및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관리기관”이라 한다.
- 나. 중소기업을 “참여기업”이라 한다.
- 다. 최신기술 지도 전문가를 “전문가”라 한다.

제3조 신의성실의무

신성장기술매칭사업에 참여하는 참여기업, 전문가는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사업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기획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준수, 기술개발사업에 기술지도에 대한 보안 대책 수립 및 시행, 개인명의 출원 금지 등 지식재산권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기술지도 수행 및 결과보고

- ① 전문가는 기술지도 시작 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첨1), 서약서(별첨2), 기술지도계획서(별첨3)를 관리기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술지도가 종료한 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별첨5)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기술지도 시작 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첨1), 기술지도계획서(별첨3)를 관리기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술지도가 종료한 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별첨4)를 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전문가는 선량한 기술지도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본 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지도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한다.

④ 전문가는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기술지도에 소요된 일수(시간포함)와 지도 책임자를 성실히 기재하여야 하며, 기술지도 과정의 증빙서류 일체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참여기업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기술지도에 소요된 일수(시간포함)와 지도받은 사항을 성실히 기재하여야 하며, 기술지도 과정의 증빙서류 일체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기술지도 사업비의 지급

① 관리기관은 전문가에게 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액(10%) 지급을 확인한 후 신성장기술매칭 사업비(정부출연금 90%)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착수시기, 지도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본 협약서 제7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검토 및 결과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참여기업은 협약 체결시에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액(10%)을 관리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해당금액을 기술지도 종료 후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별첨4) 제출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 관계 자료의 제출 등

① 참여기업, 전문가는 관리기관의 필요 시 현장확인, 관계 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 전문가는 관리기관의 기술지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 협약의 해약

① 전문가와 참여기업은 상대방이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참여기업의 대표자 등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을 수행 또는 활용하는 자(이하 “사업수행자”라 한다)의 연구 부정행위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기술지도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사업수행자의 참여 의지가 미흡하거나 사업수행을 성실히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업수행자가 사업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라. 사업수행자에게 천재지변, 부도·회생계획의 불인가·폐업, 대표자의 채무불이행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관리기관 또는 이들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실태조사 결과 “중단”으로 결정되거나, (정밀)현장실태조사 등에 불응한 경우

바. 지도기술에 대한 이해와 성과가 기술지도 책임자가 판단 시 기 달성되어 기술지도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사. 사업수행자의 의무사항 불이행이 발생하여 해소가 되지 않았을 경우 및 사업수행자가 3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아.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참여기업 등으로 선정된 경우 및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선정됨이 협약이후 확인된 경우

자. 협약 당사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차. 참여기업이 대기업에 합병된 경우 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카. 기타 가.호 내지 나.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정책상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관리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 관리기관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③ 전문가와 참여기업은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관리기관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참여기업에게 요령 제29조 내지 제30조 따라 중단, 불성실 수행, 협약 취소된 과제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및 정부출연금 전액에 대한 회수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참여기업의 의무

① 참여기업은 전문가가 기술지도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두 및 서면 인터뷰, 서류제출, 현장방문 등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진행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효성 있는 기술지도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전문가의 의무

① 전문가는 기술지도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의무로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 전문가는 참여기업의 희망기술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의 요청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전문가는 기술지도 지원이 참여기업의 사업 또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④ 전문가는 기술지도 과정에 수반되는 산출물(기술자료, 분석 및 대안제시 자료 등)을 참여기업에 제출하고, 관리기관의 요구 시 제출에 응해야 한다.

제10조 비밀유지

① 본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관리기관, 참여기업, 전문가를 포함하여 기술 지도에 관계되는 자는 사업의 진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해 외부에 공개하

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개괄적인 진행상황에 대하여 공개 또는 발표를 할 수 있다.

② 참여기업 및 전문가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정보에 대해 사업이 진행 중일 뿐만 아니라 종료된 후에도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다만, 사업이 종료된 후 관리기관의 승인 또는 참여기업의 동의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관계법령·관례의 준수 및 해석

① 전문가와 참여기업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본 약관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② 본 약관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해석하는 바에 따른다.

③ 참여기업과 전문가는 본 협약의 내용 또는 상기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리기관은 전문가와 참여기업 또는 기타 관련된 자에 대하여 요령 제29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서로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3조 기타

본 협약서(별첨서류 포함)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별첨>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참여기업, 전문가 각각 제출)
 2. 서약서(전문가)
 3. 기술지도 계획서(참여기업·전문가 공동 제출)
 4.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참여기업)
 5.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전문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가. 수집·이용 목적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2023년 신성장기술매칭사업」 과 관련된 사업 운영 및 관리
- 나. 수집·이용할 항목 : 성명,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 다.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1년간 「2023년 신성장기술매칭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보유·이용됩니다.
-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 진행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① 행정기관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② 기타기관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에 의한 전문가
-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2023년 신성장기술매칭사업」 운영 및 사후 관리
- 다.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사업 운영 및 진행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라. 제공받은 자의 개인 정보 보유·이용 기간 : 제공된 날부터 1년간 「2023년 신성장기술매칭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보유·이용됩니다.
- 마.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 신청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월 일

(소속)

(성명)

(인)

서 약 서

본인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시행하고 있는 신성장 기술매칭사업 기술지도 위원으로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6조(비밀유지의무)에 의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사업의 기술지도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다음의 연구기밀에 대해 사업 진행 기간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가. 참여기업의 연구에 관한 사항

- 기업 보유기술, 연구내용, 연구실적에 관한 사항
- 기업책임자 개인 이력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나. 기타 관리기관 장이 비밀을 요하는 사항

2. 본 기술지도의 수행계획 및 수행내용이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본 기술지도 대상기관의 임직원, 대표, 사외이사 및 고문 등 신분상의 이해관계와 주식을 비롯한 유가증권 보유 등 재산상 이해관계가 없음을 서약한다.
4.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향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참여 자격을 박탈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제재와 손해배상도 감수한다.

2023 . . .

소 속 : _____

직 급 : _____

성 명 : _____(인)

경 기 지 방 중 소 벤 처 기 업 청 장 귀 하

신성장 기술매칭사업 1:1 기술지도 계획서

1. 기술지도 개요

기술분야			
기술명			
참여기업	기업(대표자)		업종
	주생산품		담당자(연락처)
전문가	성명		소속/직위
	최종학위		연락처

2. 지도일정

구분	지도장소	지도내용	추진일정																							
			월 일								월 일								월 일							
			1h	2h	3h	4h	5h	6h	7h	8h	1h	2h	3h	4h	5h	6h	7h	8h	1h	2h	3h	4h	5h	6h	7h	8h
1																										
2																										
3																										
4																										
5																										
6																										

※ 필요시 추진일정 변경 및 서식 추가

2023. . .

참여기업 : 대표(이사) (인)

전문가 : (인)

신성장 기술매칭사업 1:1 기술지도 결과 보고서(참여기업)

1. 기술지도 개요

기 업 명		전 문 가	
분 야		기술지도시간	총 시간
기 술 명			
수 행 일 자	2023. . . ~ 2023. . .		

2. 기업 애로사항 및 문제점

--

3. 기술지도 일정별 수행내역 및 특이사항

번호	수행내역		
1	수행일자		수행시간
	수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도 내용을 기업중심으로 작성 ○ 수행계획서 작성내용을 기반으로 비교하여 작성 	
	특이사항	<p style="text-align: right;">현장사진 (첨부)</p>	
총 수행시간		00시간 00분	

※ 수행일자 추가 등 필요시 서식 추가

4. 기술지도 결과 및 성과(기술지도 전후비교)

기술지도 전 현황	기술지도 후 성과
1.	1.
2.	2.
3.	3.
4.	4.

5. 향후 활용계획

2023. . .

참여기업명 :

대표 (이사) :

(인)

신성장 기술매칭사업 1:1 기술지도 결과 보고서(전문가)

소속 :

성명 :

1. 기술지도 개요

기업명		기술지도시간	
기술명			
수행일자	2023. . . ~ 2023. . .		

2. 참여기업의 기술현황 진단

--

3. 기술지도 일정별 수행내역 및 특이사항

번호	수행내역		
1	수행일자		수행시간
	수행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도 내용을 전문가 중심으로 작성 ○ 수행계획서 작성내용을 기반으로 비교하여 작성 	
	특이사항		
총 수행시간		00시간 00분	

※ 수행일자 추가 등 필요시 서식 추가

4. 향후 참여기업에 필요한 사항 기술

2023. . .

소속 :

성명 :

(인)